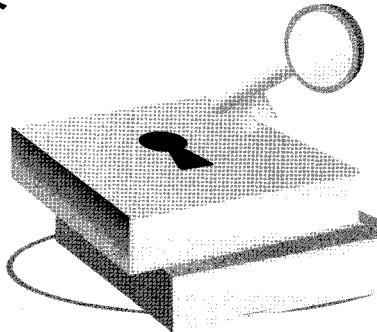


의안 번호 39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한나라당 이명규 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환친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09. 3. 3

대표발의

이명규 의원

발의자

이명규 · 이한성 · 유성엽 · 유승민 · 정병국 · 한선교 · 김태원 · 황영철 · 김성수
박대해 · 손범규 · 이시종 · 이학재 · 임동규 · 이윤석 · 김영진 · 김기현 · 안효대
강석호 · 조원진 · 황우여 · 송영선 의원 (22인)

제안이유

천연가스자동차(CNG, LNG)는 미세먼지 발생량과 CO₂ 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게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며, 클린디젤자동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RO 4, 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비 등이 우수하여 동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되었음.

현재 동법에서는 기술개발 및 그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 자동차와 클린디젤 자동차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건을 일괄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건을 제2조에서 일괄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함(안 제2조제2호).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8호”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를 “하이브리드자동차 · 연료전지자동차 ·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자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2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가솔린 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개수의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현 훈} 水 온湯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 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p> <p>〈신 설〉</p> <p>3. ~ 6.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7. (생 략)</p> <p>제9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고시) 지식경제부장 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8호————— ——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 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p> <p>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3. ~ 6. (현행과 같음)</p> <p>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가솔린 자동차나 천연가스 자동차와 유사한 개수의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삭제〉</p>